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용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370

발의연월일: 2020. 7. 24.

발 의 자:이용호·이원택·김수흥

배진교 • 이상직 • 최인호

고영인 · 남인순 · 이상헌

한병도 · 김영호 의원

(11일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트라이애슬론(철인3종 경기) 종목의 유망주이자 국가대표 출신 선수가 소속팀 지도자 및 스태프 등으로부터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폭 력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했음.

이와 관련 최근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,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직장인의 절반 가까이는 괴롭힘을 경험한 것으로 응답했고, 이들 중 60% 이상은 참거나 모른척 하는 것으로 나타났음. 즉, 체육계 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근로환경이나 직장 내에서도 여전히 "직장 내 괴롭힘"은 공공연하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.

이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근로자가 신체적 ·정신적 상해를 입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,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함으로써, 위반자는 엄벌에 처하고 직장 내 일상적 괴롭힘 현상을 근절하려는 것

임(안 제109조제1항).

법률 제 호
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9조제1항 중 "제36조, 제43조, 제44조, 제44조의2, 제46조, 제56조, 제65조,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"을 "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"으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. 제36조, 제43조, 제44조, 제44조의2, 제46조, 제56조, 제65조, 제72 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
- 2. 제76조의2를 위반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·정신적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자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09조(벌칙) ① <u>제36조, 제43조,</u>	제109조(벌칙) ① <u>다음 각 호의</u>
제44조, 제44조의2, 제46조, 제5	어느 하나에 해당하는
<u>6</u> 조, 제65조, 제72조 또는 제76	
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	
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	
하의 벌금에 처한다.	
<u><신 설></u>	1. 제36조, 제43조, 제44조, 제4
	4조의2, 제46조, 제56조, 제65
	조,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
	6항을 위반한 자
<u> <신 설></u>	2. 제76조의2를 위반하여 다른
	근로자에게 신체적·정신적
	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
	<u>게 한 자</u>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